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경북형 자치경찰모델 구상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경북형 자치경찰모델 구상

연구진

한부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재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CONTENTS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04
	2. 연구 범위 및 방법	06
II	자치경찰제 이론적 배경	
	1. 자치경찰제 의의	07
	2.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의의 및 배경	08
III	경북 치안 현황 및 경북자치경찰제 도입 방향	
	1. 경북치안 여건 및 현황 분석	11
	2. 경북 자치경찰제 도입 기본방향 및 주요 시책	13
IV	경북 자치경찰제 모형(안) 도출	
	1. 법적 제도적 기반	16
	2. 자치경찰제 조직	18
	3. 자치경찰제 인력 및 재정수요 예측	25
V	경북 자치경찰제 역량 강화 방안	
	1. 자치경찰제와 특별사법경찰 연계 및 통합	28
	2. 자치경찰과 행정조직과의 연계	31
	3. 자치경찰과 주민참여	32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배경

-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경찰력을 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써 도입에 관한 논의는 국민의 정부 이후로 계속되어 왔으나 도입을 위한 입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였음
 - 국민의 정부에서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시안이 마련되었으나 추진여건 불비로 시행이 유보되었음. 참여 정부에서는 기초단위 선택적 도입안이 마련되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임기종료로 폐기되었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초단위 선택적 도입안을 유지하였으나 법제화는 무산되었음
 - 2004년 지방분권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은 국가 의무사항으로 최초로 명문화되었음
 - * 제10조(특별행정기관의 정비 등) ③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 2006년 7월 참여정부 시기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도입되었으며 정부차원에서는 향후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자치분권과 자치경찰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 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2018년 11월 13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내놓았음



-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 외 2개의 자치단체 등 총 5개 지역을 중심으로 2019년부터 시범도입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음
-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논의된 배경은 획일화된 국가경찰제 운영으로 인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활동과 서비스에 적절히 대응하기 힘든 점, 경찰서 중심의 경찰 활동으로 광역적 경찰활동의 한계, 비민주적 경찰조직 운영 등 현행 국가경찰제의 한계점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됨
- 전국 약 12만 명에 이르는 경찰이 소수의 경찰지휘부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중앙집권적 경찰체제에서 다양한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자율적·창의적 치안 활동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음
- 중앙집권적, 획일화된 치안 등 경찰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경찰행정, 그리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통한 자치경찰의 실현은 주민자치의 목적인 지역주민의 복리 및 민생치안 증진 및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치안행정의 분권화가 대두된 것임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치안서비스 제공, 시민이 통제하고 참여하는 경찰권 행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이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의 국정과제 제시, 그에 따른 자치분권 위원회의 도입(안)이 마련됨에 따라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광역단위 자치경찰 모델(안)을 도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자치경찰본부 및 자치경찰대의 조직, 인력, 예산 등 자치경찰제 도입방향에 부합하는 경북 자치경찰 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음

- 이를 통하여 경북이 치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함임
- 아울러 경북형 자치경찰제 모델을 위한 일반 행정과 경찰의 연계 및 통합 방향을 제시하여 경북에 자치경찰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기여하는데 있음

2.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 범위

- 본 보고서는 1장 서론, 2장 자치경찰제의 이론적 검토, 3장 경북치안현황 및 자치경찰 모델의 방향, 4장 경북형 자치경찰 모델(안) 도출, 5장 경북자치경찰제 역량강화 방안으로 구성하였음

연구 방법

- 연구방법은 각 부문별 연구 내용에 따라 적정방법을 활용함
- 우선, 자치경찰제 관련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정부 문서 등 기존의 문헌들을 분석하였음
- 경북형 자치경찰모델을 구상하기 위해서 학계, 실무전문가들에게 의견조사를 진행하였음



자치경찰제 이론적 배경

1. 자치경찰제 의의

자치경찰제의 개념 및 필요성

① 개념

- 안영훈(2007)은 자치경찰제를 지방정부의 의회, 단체장의 책임 하에 경찰행정관서의 유지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조직, 인사, 재정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직·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음
- 신현기(2008)는 경찰권을 자치 단체가 행사하며 행정 조직 역시 자치단체에 속해 행해지는 제도로 자치경찰제를 정의하였음
- 김성호(2012)는 지방분권, 민주화, 정치적 중립성 등을 반영해 선출된 자치단체의 장이 경찰행정관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지역 주민에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음
- 최천근(2014)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주민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음
- 최종술(2017)은 지방분권의 이념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 권한, 책임, 그리고 주민의 의사에 기초해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음
- 황문규(2018)는 분권의 이념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조직을 설치 및 운영하고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경찰제도로 정의하였음

- 본 연구는 자치분권의 이념에 기반하여 지역 내 지방자치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일반 행정의 영역과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치안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로써 자치경찰제를 정의함

②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는 종합행정을 구현하는 단체로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함에도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지 못하여 종합적 행정의 실천 및 집행력이 매우 미약하게 만들어졌음(최종술, 2010)
- 현 경찰조직은 1인 경찰청장 아래 명령과 지휘체계에 따라 12만여 명의 경찰력이 움직이는 구조임(황문규, 2018)
- 자치경찰제는 중앙 집권화된 국가경찰의 분권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권한을 부여해 주민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자치의 완성도를 높여 보다 높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충실할 수 있게 함
- 치안서비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의의 및 배경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의 의의

① 첫째, 중앙 집권화된 국가경찰의 지역 분산

- 국가경찰이 잘하는 부분은 유지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안전·교통·치안 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우선하면서 경찰권 분산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함



- 또한, 경찰권의 분산은 최근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는 수사권 조정 등이 결과적으로 경찰권을 확대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더욱 필요함
- 특위의 자치경찰제는 2022년부터 시작되는 3단계까지 총 4만3천 명의 국가경찰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를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전체 경찰력의 36%를 자치경찰로 분산함으로써 경찰의 총량을 유지함과 동시에 추가적 예산의 투입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음
- 다만, 수사의 경우 성·학교·가정폭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제한된 수사 권한만을 행사하게 때문에 자치경찰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의 비대화 우려를 불식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음
- 하지만 수사에 있어 확대되는 경찰권은 국가수사본부의 설치를 통해 수사경찰과 일반 경찰로 분리되며, 수사경찰과 일반경찰로 분리된 국가경찰을 다시 자치경찰로 분리한다면, 자칫 경찰조직을 와해시켜 치안력의 급격한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음

② 둘째, 제주자치경찰제의 한계 극복

- 제주자치경찰제는 2006년 7월부터 시행되어 10여년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음
 - 가정폭력, 학교폭력, 교통사고 등 사무를 자치경찰로 이관하였으며, 교통사고 조사의 87% 가량을 자치경찰이 수행하고 있음
- 제주경찰제의 정체성이 경찰인지, 아니면 지자체의 질서행정을 수행하는 보조기관에 불과한지 모호함
 - 주민들은 자치경찰에게도 국가경찰의 역할을 기대하였으나, 수사권도 음주운전자를 단속할 권한도 없는 제주자치경찰을 경찰로 보기는 어려웠던 것임(황문규, 2017)
- 제주자치경찰은 경찰활동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고, 범죄 진압을 위한 초동 조치권이 없음

- 이에 반하여,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의 자치경찰은 총 4만3천 명의 인력으로 최일선 종합치안의 출발점인 지구대와 파출소 업무를 사실상 책임지게 됨. 또한, 공무수행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권과 더불어 사건사고현장에서 초동 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치안의 보조자에 불과했던 제주자치경찰과 달리 치안의 주체로서 지자체의 인적(CCTV 통합관제센터), 물적 자원(보안관, 특사경 등)을 활용하여 치안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임

③ 셋째, 추가 재정투입을 최소화해 지역별 치안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

- 지자체별 편차가 큰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한 것임

④ 넷째, 지역 토착세력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치경찰을 보호/통제

- 시·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두고 자치경찰의 수사권을 제한한 것도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한 조치임

⑤ 다섯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책임 떠넘기기 방지

- 모든 사건사고현장의 초동대응(수사)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공동사무로 정하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자치경찰 또는 국가경찰이 초동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관할 떠넘기기를 방지하고 있음
- 이외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을 때, 특사경과 자치경찰을 융합하는 문제,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의 권위에 대한 문제, 지역정보를 누가 독점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⑥ 여섯째,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치안 서비스 제공

- 규모의 경제와 치안서비스의 현장 대응성을 고려하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함



III 경북 치안 현황 및 경북자치경찰제 도입 방향

1. 경북치안 여건 및 현황 분석

- 경상북도는 19,033km²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인구는 2,677천 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10개시와 13개의 군으로 행정구역이 구성되어 있으며, 332개의 읍·면·동을 가지고 있음
- 경상북도의 지역내 총생산은 103조 원으로 전국 총생산의 6%에 해당하고, 경상북도의 예산규모는 8조 6,456억 원이며, 시군의 예산은 총 15조 4,022억 원으로 당초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경상북도의 예산규모는 광역자치단체 행정 단위 도(道) 중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음
- 경상북도는 경북지방경찰청과 24개 경찰서가 설치되어 경북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데, 경북지방경찰청은 2부, 2담당관, 11과 실로 구성되어 있음. 경북지방경찰청 산하에는 24개 경찰서가 있으며, 지구대 24개, 파출소 209개, 기동순찰대 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7,637명이 경북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음(2019년 현재)
 - 경찰관 6,498명, 의경 925명, 일반직 214명임
 - 지방청에는 경찰관 874명, 일반직 82명이 근무하고 있음
 - 경찰관 6,498명 중 이관 대상 기능인원은 3,815명으로 생활안전 276명, 지구대·파출소 2,924명, 그리고 교통 615명임
- 급지별로 살펴보면, 1급지 경찰서(경주, 포항북부, 포항남부, 구미, 경산, 안동)에는 2,801명, 2급지 경찰서(김천,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칠곡)에는 1,418명, 3급지 경찰서(의성, 청도, 영덕, 울진, 봉화, 예천, 성주, 청송, 영양, 군위, 고령, 울릉)에는 1,405명이 근무하고 있음

- 경상북도의 치안 수요를 인구, 5대 범죄, 교통사고, 112신고, 경찰인력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인구는 5.2%, 5대 범죄는 4.3%, 교통사고는 6.5%, 112신고는 4.6%, 경찰인력은 5.4%를 차지하고 있음.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412명임
 - * 전국, 경기남부, 서울의 경찰 1인당 담당인구 각각 428명, 563명, 350명임

| 경찰관서별 인력(정원) (2019. 5월말 기준) |

지방청		874			
경찰서		5,624			
1급지 (2801)	경주	494	의성	176	
	포항북부	443	청도	120	
	포항남부	432	영덕	123	
	구미	656	울진	145	
	경산	413	봉화	115	
	안동	363	예천	134	
2급지 (1418)	김천	287	3급지 (1405)	성주	134
	영주	226	청송	106	
	영천	233	영양	86	
	상주	242	군위	101	
	문경	192	고령	109	
	칠곡	238	울릉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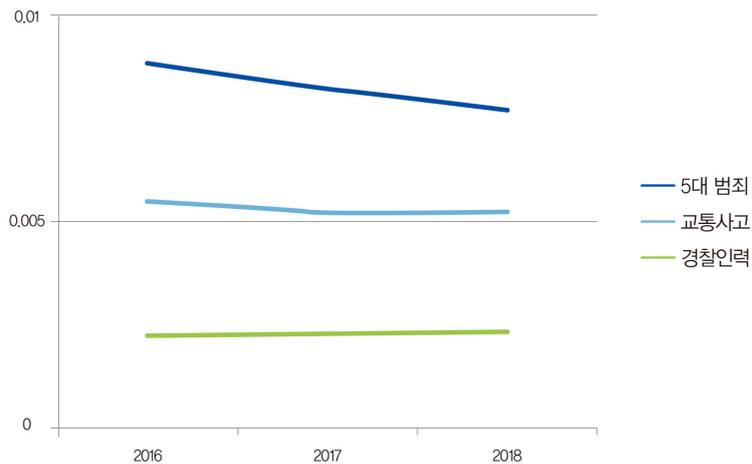
| 전국 대비 치안수요 및 경찰인력 비중('18. 12월말 기준) |

구분	전국	경북지방청(%)
인구	51,826,059명	2,676,831명(5.2)
5대 범죄	488,737건	20,775건(4.3)
교통사고	217,148건	14,081건(6.5)
112신고	18,730,627건	863,497건(4.6)
경찰인력	118,651명	6,390명(5.4)



- 경상북도의 최근 3년간 치안수요를 살펴보면, 인구 1인당 5대 범죄는 줄고 있으며, 인구 1인당 교통사고는 감소율이 미미하고, 인구 1인당 경찰인력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경북형 최근 3년간 치안수요 |



- 경상북도는 넓은 관할구역 및 도농 혼재로 지역적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경찰활동 만족도 현황

- 2016년 경북 경찰활동 만족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나, 2017년, 2018년 경북 경찰 활동 만족도는 평균 만족도(2016년: 77.4, 2017년: 74.2, 2018년: 79.4)에 미치지 못함

2. 경북 자치경찰제 도입 기본방향 및 주요 시책

- 경찰청 개혁위원회는 2017년 11월에 도입 가능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모델’을 제시하였고 이는 현 국가경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광역 시·도에서 국가경찰과는 독립적인 자치경찰을 설치 운영한다는 방안으로 실시하였음

- 경북 자치경찰제 도입의 기본방향은 첫째, 국가경찰의 분권화를 통한 자치분권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고, 둘째, 도민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다양한 지역의 치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며, 셋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자치경찰 관련 주요 시책

-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치안정책을 추진함
- 지역실정에 맞는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를 심층관리함
 - APO·전문기관 간 협업, 가정폭력 재발 방지 및 실질적 피해자를 보호함
 - 신상정보등록 대상 지적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통한 재범을 방지함
 - 학교·가정 밖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함
 - 청소년 재범 방지를 위한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함
- 민생침해범죄 근절로 치안을 안정화시킴
 - 생활 주변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함
-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협력치안을 활성화함
 - 민간기업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내 범죄취약지 범죄예방 및 환경개선 동참을 유도함
 -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를 통해 범죄예방진단경찰관 중심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
 - 인구·사회학적·물리적 환경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 전략을 추진함
 - 지자체와 협업으로 데이터 분석에 따른 범죄취약지 대상방범시설물을 설치하고 주민 불안감을 해소함



- 자율방범대 및 시민경찰 등 경찰 협력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치안정보를 공유하고 유대감 및 자긍심을 고취함
- 교통 사망사고 예방활동을 펼침
 - 보행자 우선 교통안전정책 추진으로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함

IV

경북 자치경찰제 모형(안) 도출

1. 법적 제도적 기반

법적 제도적 기초

-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지방분권법 제12조 제3항에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라고 명시하여 국가와 지방간의 권한과 책임의 배분을 합리적으로 추진한다는 이념에 따라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기능 배분 합리성을 명시하였음
- 현행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내용 전부 개정을 준비 중에 있음. 또한, 경찰공무원법을 전부 개정하여, 자치경찰의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을 규율하고 있음

| 경상북도 자치경찰관련 조례제정 계획 현황 |

유형	법규명
제정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 자치경찰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정규칙·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 자치경찰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경상북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칙 • 경상북도 자치경찰 무기·탄약관리 규칙 등
개정규칙·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및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의결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것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법적 기반구축을 위해 위의 표와 같은 자치경찰에 관련된 조례 제정을 계획하고 있음

자치경찰제 기능 및 수요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사무범위는 법령 제정 과정에서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소관사무가 열거될 가능성이 높음
 - 열거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자치경찰 사무를 구체화하고 이를 명시함으로써 자치경찰 관할권을 분명히 하여 주민들이 지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도록 하기 위함임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자치분권위원회와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단계별 시행 시기, 사무와 인력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음

|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단계별 사무와 인력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최종단계
대상 지역	5개 지역 (서울, 세종, 제주 외 2개 시도)	전국	전국	전국
사무	자치경찰 사무 약 50% (일부 수사권 포함)	자치경찰 사무 약 70~80% (일부 수사권 포함)	자치경찰 사무 100%	평가 후 추가 확대
인력	7,000~8,000명	30,000~35,000명	43,000명	
시점	2019년	2021년	2022년	정착수준에 맞춰 평가 후 판단

- 지역 내의 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역할분담과 수행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자치경찰대가 협약에 의해 확정할 수 있음

- 법령에 의해 자치경찰 사무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수행방식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협의하여 확정할 수 있음
- 국가경찰은 수사, 정보, 보안, 외사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또는 통일적 민생치안에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 등 주민밀착 활동이나 이에 밀접한 수사를 담당하게 됨
- 자치경찰의 주민 밀착형 수사에 대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경계가 애매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치경찰 수사 사무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열거하고 있음

| 자치경찰 수사 사무 |

분야	유 형
주민 기초 생활과 밀접	성폭력 • 음란공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가정폭력 •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학교폭력
	교통사고 • 교통사고 등(뺑소니, 사망, 12개 항목, 물피 도주 제외)
현장 법집행력 확보	• 음주운전(상습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포함), 무면허 운전 • 자치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관공서 주취소란 사범
특사경 수사	• 지자체 특사경 사무 36종
지자체 책무	•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 등

2. 자치경찰제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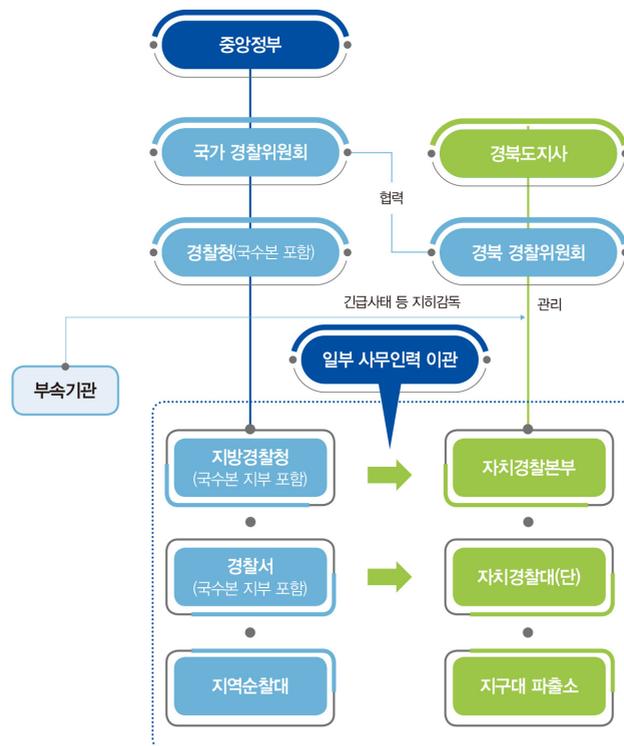
자치경찰제 조직 설계

- 자치분권위원회와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자치경찰 모델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기관구성과 자치경찰의 조직, 사무 및 권한, 인사, 인력, 재정에 대한 자치경찰제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음



- 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에 3월에 의원 입법으로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인 자치경찰제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조직설계를 시도하고자 함
- 경상북도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따른 조직은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경상북도 자치경찰본부, 자치경찰대, 지구대 및 파출소로 기관 구성이 이루어지며, 이들 기관은 경찰법 개정안에 근거함
- 경상북도 자치경찰제는 지금까지 국가경찰이 수행하던 국가사무로서 치안수요를 자치분권의 이념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설계가 필요함
- 경상북도청과 국가경찰, 그리고 신설될 경상북도 자치경찰단의 조직모형과 위상을 고려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도식하였음

| 경상북도 자치경찰제 도입 기관구성(안) |



자치경찰위원회

-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경북자치경찰에 대한 조직·인사·재정 등의 운영지원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심의 및 의결기구로서 구성됨
-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은 경상북도지사가 임명하며,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경상북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지휘하고 지도·감독함
-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은 총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함
- 임기는 3년으로 임명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 위원의 비율을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함
 - 위원의 추천기관으로는 지사 1인, 경북도의회 2인, 대법원 1인, 국가경찰위원회 1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자치경찰 활동 기본계획수립, 치안개선방안 제시, 평가에 관한 사무, 조직, 인사, 예산 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정책결정, 자치경찰본부장 및 자치경찰대장 후보자 추천,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 체결 및 변경에 대한 사무 담당 등을 포함함
-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대외적으로 자치경찰의 기능, 조직, 인사, 재정, 절차에 대한 정책 및 대안을 경상북도지사와 도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경상북도 자치경찰본부의 구성

- 경상북도 자치경찰본부는 경상북도에 소속되어 설치·운영되며, 경상북도지사의 지휘를 받게 됨
- 경상북도 자치경찰본부는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며,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본부장에 대한 인사추천권을 가지게 됨



- 경상북도 자치경찰본부장은 자치치안감으로 임명하며, 정치적 독립과 책임치안을 구현하기 위한 임기 2년을 보장함
-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국가경찰이 지원 가능한 직위공모형식¹⁾으로 임용될 수 있는 보완적 장치를 둠
- 경상북도의 치안에 대한 책임기관으로서 경상북도 자치경찰본부는 경북경찰청, 교육기관, 의료기관, 소방본부와 유기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도민의 신체,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 내 주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 강화가 필요함
- 경상북도 자치경찰본부장 소속의 시, 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자치경찰대를 설치할 수 있음

| 경상북도 자치경찰본부 조직(안) |



1) 경상북도 자치경찰본부장을 공개 모집하며, 지원 가능한 자는 국가경찰, 타 지역 및 경북 자치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임용된 자는 임기동안 경상북도 자치경찰 본부장으로 직무를 수행함

경상북도 자치경찰대 구성

- 경상북도 자치경찰본부장 소속으로 자치경찰대를 둘 수 있으며, 자치경찰대는 산하에 지구대와 파출소를 설치할 수 있음
- 자치경찰대는 조례로 정한 관할 구역 내의 자치경찰 사무의 현업업무를 주도적으로 집행하게 되며, 수행업무의 범위는 자치경찰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자치경찰대의 사무범위는 관할 자치경찰대와 경찰위원회,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협약에 의해 사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사무의 처리절차, 수사의 범위 및 수사의 절차에 대한 협약이 필요함
 - 자치경찰제가 정착될 때까지 사무범위에 대한 조정과정이 있을 것이고, 제도가 정착되면, 수사의 절차나 수사의 지원 등에 대한 사무는 시장, 군수와 협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경상북도 내의 자치경찰대는 지역의 특성과 치안수요를 고려하여 조직체계를 상이하게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치경찰대의 기능과 사무를 고려하여 표준 모델을 아래 그림과 같이 제시하고자 함

| 경상북도 자치경찰대 기본모델 |



- 3급지(농촌형)의 경우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산업안전과를 없애고 산업안전계를 생활안전과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총무과는 총무인사기능에 집중하고



파출소 지원팀, 장비관리팀, 민원봉사팀은 총무인사팀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경상북도 농촌형 자치경찰대 모델 |



- 자치경찰대의 설치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는 방안(제1안)과 자치경찰대의 치안수요를 고려하여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는 방안(제2안)이 있음

행정구역 일치형 자치경찰대 구성

- 경상북도의 시군과 자치경찰대의 관할구역을 일치시키는 안으로서 시군의 행정 구역과 자치경찰대의 치안담당구역을 일치시키는 대안임
- 일선 시군과 자치경찰대가 업무협조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구역 내 발생하는 자치경찰 치안업무를 책임성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또한, 행정구역별 관할 자치경찰대가 일반 행정 관청인 시·군 자치단체와 치안서비스를 책임성을 가지고 추진함으로써 서비스의 완결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현재까지 추진하던, 주민보호 사무를 확대·심화한다는 점에서 자치분권의 이념을 실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경찰대가 공동의 관할권 내에서 치안서비스를 협력적으로 추진하고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행정구역일치형 자치경찰대는 국가경찰과 관할구역을 달리 함으로써 국가경찰과 협력적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 현재의 국가경찰은 포항에 2개의 경찰서를 두고 있으며, 일부는 2개 군이 1개의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의 업무영역이 상이한 시스템에서는 우려할 문제는 없지만, 자치분권 관련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는 자치경찰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경상북도의 포항시와 구미시 등의 규모가 큰 도시와 울릉군, 군위군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치안서비스 범위와 품질의 차이를 균등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 자치경찰제도입이 광역단위로 도입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치안수요를 고려한 행정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자치경찰대의 관할구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치경찰대의 사무 처리의 특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치안수요 고려형 자치경찰대 구성

- 국가경찰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관할구역을 동일하게 운영하면서 국가경찰을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대를 구축하는데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기능적 분업을 통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주민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하고, 전문화한다면,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경상북도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경상북도청이 주민안전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재난안전사무, 특히 소방·방재 안전 사무와 관할권이 유사하므로, 경북도민의 지역 내의 위협으로부터 국가경찰, 자치경찰, 소방이 협업이 가능하며, 통합적 치안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경상북도 자치경찰본부장 소속의 자치경찰대를 설치하고 자치경찰대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둘 수 있으며, 현재 모든 지구대와 파출소는 자치경찰대에 이관할 것으로 예상됨

3. 자치경찰제 인력 및 재정수요 예측

자치경찰제 인력 수요 예측

- 경상북도의 자치경찰대 도입에 따른 자치경찰의 치안수요를 예측하여 자치경찰 인력 수요를 예측할 수 있을 것임
- 자치경찰 시범운영 개요에 따르면 자치경찰의 인력을 1단계 2019년까지 7,000~8,000명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2단계에서 30,000명~35,000명으로 제3단계 전 광역자치단체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예정된 자치경찰사무를 100% 실시할 경우 43,000명으로 인력수요를 예정하고 있음
- 이러한 시범실시 단계에서 경북형 자치경찰제 도입은 인력과 재정을 고려하여 일부 사무를 대상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면, 1~3 급지별(도시형, 중간형, 농촌형)로 단계별 추가되는 인력과 사무를 구분할 수 있는데, 시범실시 첫 단계에서는 1급지 1개서, 2급지 1개서, 3급지 2개서를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국가경찰에서 43,000명의 국가경찰인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경우 경상북도에 예정된 자치경찰인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임
- 경상북도 경찰청의 정원 6,498명을 기준으로 자치경찰사무를 40%로 추정하여 약 2,500명의 인력이 자치경찰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하는 안(제1안)이 있음
- 정부안이 지구대 파출소는 자치경찰에 100% 이관한다는 기준을 중심으로 지구대 파출소요원 2,924명, 생활안전을 담당하는 경북의 국가경찰 중에서 276명, 교통

사무를 담당하는 615명을 자치경찰에 이관한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추정인력 3,815명을 예상한 안(2안)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공공기관수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기준인건비, 교부금 등의 산정방식을 추정하여 전체 자치경찰 이관예정 인력 중에서 경상북도의 자치경찰 인력비중을 고려할 때 3,450명 정도의 인력이 추정될 수 있음(제3안)
- 경상북도의 자치경찰 인력수요는 국가경찰의 자치경찰 이관인력규모, 자치경찰의 법정사무의 규모와 사무추진을 위한 인력 수요, 경상북도의 인구, 면적, 그리고 경제 지표, 유동인구, 자치경찰조직 설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 질 것으로 판단됨

자치경찰제 소요예산 확보방안

- 국가사무 지방이양의 기본원칙이 포괄이양방식으로 이론이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치경찰제 도입 시 포괄이양방식으로 국가경찰의 사무가 자치경찰에 이양되는 만큼, 인력, 조직, 장비, 재원이 포괄적으로 이양되어야 할 것임
 - 자치경찰제의 도입 시, 국가경찰의 예산 중에서 자치경찰에 소요되었던 예산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자치경찰의 소요예산은 전액국비로 충당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음
- 다만, 자치분권위원회의 이원화 모델은 청사, 장비, 장구 등 이중적으로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함. 따라서, 사무공간과 인력중복의 최소화를 위해 현재 이원화 모델을 재검토하여 광역에 설치되는 자치경찰본부 이하 기초자치단체의 시·군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 전체를 이관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됨
- 시범실시 단계에서는 이원화 모델과 일원화 모델의 투트랙 실시로 효과가 높은 모델을 채택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자치경찰본부, 자치경찰대의 경무·정보화 인력 등 미반영으로 추가적인 인건비 소요부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함. 제주도 자치경찰제 도입 시에도 추가적인 인건비 예산이 수반되었음



-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경상북도의 소요 자원 규모는 도경예산 중에서 이관인력 규모에 따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치경찰의 사무 중에서 국가경찰이 수행하던 사무의 규모나 질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경상북도의 재정계획이 동반될 필요가 있음
- 주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의 사무 공간, 통신장비, 행정장비 등에 대한 현대화가 효과적 자치경찰 직무수행을 위한 선결적 전제조건이 될 수 있음



경북 자치경찰제 역량 강화 방안

1. 자치경찰제와 특별사법경찰 연계 및 통합

-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일반경찰이 담당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사법경찰 직무를 수행하여 처리하는 치안업무를 지칭하며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근거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음
 -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 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리법에 의해 사무의 범위와 수행기관을 정하고 있음
- 관련 법률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과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있으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법무부령)이 집행상의 직무지침이 되고 있음
- 수사기관이 수행하는 사법경찰의 기능과 행정관청이 수행하는 권한과 법령근거를 도식하면 아래 표와 같음

| 경찰과 특별사법경찰과의 비교 |

구분	수사기관	행정기관
근거법	형사소송법, 형사관련법	행정근거법령
권한	체포, 구속, 압수수색, 계좌추적	행정단속, 계고, 고발, 대집행
유관기관	검찰, 형사법정	해당행정기관, 권익위, 행정심판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의 업무영역은 아래에서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음
 - 특별사업경찰의 직무범위를 살펴보면, 식품단속, 공중위생 단속, 농수산물원산지 표시 및 인삼·양곡 단속, 환경 단속, 청소년보호업무, 의약품 단속, 산림보호·국유림 경영, 소방에 관한 업무, 문화재 보호, 공원관리, 차량운행제한 단속 및 도로시설 관리, 관광지도사무, 저작권침해 단속,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단속, 외화획득 원료기재 수입 및 변경승인, 농약·비료 단속, 하천감시, 개발제한구역 관리, 가축 방역·검역, 자동차의무이행 관련 단속, 해양환경관련단속, 부정경쟁행위단속,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단속 등임
- 경상북도는 포항 등 대도시가 포함되어 도의 규모와 인구 규모가 크며, 면적이 넓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 시·군의 특성에 따라 전 분야의 특별사법경찰이 설치되어 운영 되고 있음
- 경상북도에는 도본청과 시군에 특별사법경찰 조직과 인력이 있으며, 인력의 규모는 아래 표와 같음
 - 도 본청에는 31명이 직무를 수행하는 반면 시군에는 632명의 정원이 구역 내의 특별 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따른 업무조정이 필요한 분야임

| 경상북도의 특별사법경찰 현황 |

계	도(실과소)	시·군별	비고
663	31	632	사회재난과 (민생사법경찰 3명)

- 경상북도 도청이 실시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의 업무의 관할 부서와 인력 및 담당 업무는 다음 표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경상북도의 특별사법경찰 현황 |

소속	인원	해당분야 및 지명사유
계	31	
사회재난과	4	민생 5대 분야(청소년보호, 환경, 식품, 공중위생, 농산물원산지표시) 위법사건 내사, 수사, 검찰송치
세정담당관	2	지방세포탈, 체납처분면탈 등 지방세기본법 위법사항 내사, 수사, 검찰송치
해양수산과	6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감독공무원으로서 수산업법 위반사항 단속, 계도 행정처벌, 시·군에 송치지시 검찰송치
토지정보과	3	공인중개사법 및 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위반사항 단속·수사 검찰송치
건설사업소	6	도로법에 의한 과적차량 단속 행정처벌 및 위법차량 수사, 검찰송치
팔공산도립관리사무소	3	팔공산도립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수사 검찰송치
소방본부	7	소방법 위반사항 단속·수사, 검찰송치

-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시군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직무를 해태해서는 안 될 것이며,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중첩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시군의 특별사법경찰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시군의 특별사법경찰과 자치경찰제와 통합하는 대안(대안 1)과 시장, 군수의 관할권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대안(대안 2)이 제시되고 있음
- 시와 군의 특별사법경찰과 자치경찰을 통합하는 방안은 일면 자치경찰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장점이 있지만, 시·군의 일반 행정을 제한하거나 지방행정기관의 통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자치분권을 강조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음
 - 경상북도 내 시·군의 특별사법경찰의 업무와 인력을 자치경찰에 통합하는 방안으로서 자치경찰이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행정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경상북도 내의 시청과 군청은 특사경 업무를 경상북도에 역이양하는 결과가 됨으로 자치분권의 이념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음



- 특별사법경찰의 치안업무를 시장, 군수가 현재와 같이 추진하며, 일부는 자치경찰이 보완해 주는 방안으로 일부 중첩되거나 시·군 또는 자치경찰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경상북도 자치경찰본부장과 협의하여 업무추진 절차에 대한 방식을 협의할 수 있을 것임
 - 시 또는 군이 지역의 특성과 특별사법경찰 업무의 오랜 경험 속에서 시장과 군수가 자기책임 하에서 행정사무를 수행하였으며, 일반 행정과 시군의 정책 등을 반영한 정책수립과 정책집행을 실시하였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행정책임을 다소 손상시킬 우려가 있음
-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는 지역에서 일반 행정을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교통, 환경, 농식품 의약품 단속, 산림, 공원, 문화재에 대한 경북의 수요를 고려할 때, 특사경 업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과 시·군이 사무조정과 업무협업이 자치경찰제 도입의 척도가 되며, 매우 중요한 자치분권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2. 자치경찰과 행정조직과의 연계

-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범위를 확대하는 분권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지역 조성을 주요한 정책으로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은 치안업무, 재해나 사고의 위협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업무, 도로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사무, 법질서를 준수하기 위한 사무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대하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으로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 즉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내의 시·군이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재난, 안전사고에서부터 치안업무로 사무영역을 확대 하고,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에 대한

민생치안활동을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으로 주민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자치경찰제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사무수행의 필요성이 증대됨

- 국가경찰이 수행하게 될 정보, 보안, 외사 및 범죄수사 등에 대한 치안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 연계 속에서 최고의 성과를 창출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치안행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교통, 방범시설 개선, 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의 완결성 제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문제의 능동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치안서비스의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경상북도지사뿐만 아니라 경북 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함. 경상북도 경찰위원회가 시장, 군수와 사무범위를 결정하고 관할 구역을 설정하며, 유사업무를 조정·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성공적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종합행정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따라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 안전, 소방분야와, 학교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기관, 안전사고에 대응하는 의료기관, 지역방위를 책임지는 군부대, 치안관련 자원봉사조직, 지역에 국가 기반시설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책임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지역안전관리 협의회를 만들어 상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치안 공동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3. 자치경찰과 주민참여

-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우리 동네 치안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능동적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데 보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치안업무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 경찰의 자치권한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주민참여는 중요한 가치이며, 주민참여가 현재의 참여



조직을 보다 더 활성화하고, 자치경찰제에 관련 있는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조직화하고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며, 더 나아가서 일반 행정기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던 조직이나 기관을 자치경찰업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과정이 자치경찰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음

- 주민참여에서 조직화된 이익단체나 봉사단체, 사회단체의 참여를 촉진하는 기능에서 개별 주민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자치경찰의 도입과 함께 소통의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주민참여는 현재 도민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치안 자원 봉사조직과 개별 자원봉사를 통한 모니터링 제도, 그리고 일반주민의 자발적 참여, 신고, 청원제도가 있음.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함
- 현재 경상북도는 민간기업의 사회공헌사업에 연계하는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음. 또한, 지역 내 범죄 취약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주민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고 있으며, 영남·포스코에너지·LG디스플레이 등이 모범적 참여를 하고 있음
- 경북경찰청은 CPO(범죄예방진단경찰관) 등의 지역공동체 치안 협의체²⁾를 중심으로 지역안전문제를 발굴하고,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치안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따라 경상북도는 안전공동체, 치안 모니터링단 등의 조직을 결성하고 지역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자율방범대 및 시민경찰 등 경찰 협력단체가 있으며, 또한 이러한 조직을 경북의 자치경찰 협업조직으로 육성하고 계속적 교류를 통한 치안정보 공유, 유대감 및 자긍심을 고취하여 협업적 치안을 정착할 필요가 있음

2) 경북지방경찰청은 2019년 4월부터 3개월 동안 도내 24개 경찰서에서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를 운영하였음.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는 하나의 부서에 단편적인 시각을 가지고 치안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유관 부서들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사안을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설치하였음. 3개월 동안 112 신고 대응방안 등 중요 신고사건 대응 111건, 지역 내 치안문제 해결 139건 등 총 250건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였음(프레시안, 2019)

-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자원봉사자연합회 등의 조직을 통한 참여를 촉진할 수도 있음. 자치경찰제의 도입취지에 맞게 주민자치조직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주민참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 경상북도 내의 자율방범대 조직 현황과 교통봉사를 실시하는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경북 자율방범대는 경북도 내 23개 시·군 435지대, 10,16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공동체 치안을 위한 범죄예방 캠페인, 취약지역 순찰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 경북모범운전자회는 23개 시·군에서 1,42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교통안전 질서유지 및 도 내 각종 축제 등 행사시 교통관리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
 - 경북녹색어머니연합회는 경북도 내 23개 시·군 229개 학교에서 4만 2,16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등·하교길 교통안전지도 및 캠페인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하고 있음
- 경상북도 내의 공적 조직과 주민자치회, 이·통장협의회, 자원봉사협의회 등에서 공식적으로 지역의 치안문제를 협의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음
- 주민참여의 활성화는 치안 취약지역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주민밀착형 민생치안을 공동체내에서 예방하고 범죄를 축소할 수 있는 공동의 대안 마련임
- 읍면동 주민자치 조직과 자치경찰대, 자치파출소가 협력적으로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재 조직화함으로써 지역 또는 동네 치안을 주민들 스스로 기획하고 협력하며, 공동 대응하는 공동체 활동을 심화할 수 있음
- 자치경찰이 주민참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참여와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 정책집행의 공동적 추진이 가능할 때 주민참여의 만족도가 높고 참여가 능동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주민참여의 결과는 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경북 자율방범대 현황 |

연번	구 분	조직(개)	인원(명)	(남자)자율방범대		(여자)자율방범대	
				조직(개)	인원(명)	조직(개)	인원(명)
1	경주	35	1,082	27	882	8	200
2	포북	27	746	22	595	5	151
3	포남	24	793	17	553	7	240
4	구미	29	766	21	597	8	169
5	경산	25	581	15	387	10	194
6	안동	35	815	25	624	10	191
7	김천	24	425	23	401	1	24
8	영주	16	268	14	216	2	52
9	영천	23	417	17	324	6	93
10	상주	30	529	23	432	7	97
11	문경	13	460	13	460		
12	칠곡	16	412	9	235	7	177
13	의성	21	517	19	452	2	65
14	청도	11	247	11	242		5
15	영덕	12	150	10	130	2	20
16	울진	14	271	12	244	2	27
17	봉화	12	255	11	239	1	16
18	예천	14	321	13	286	1	35
19	성주	12	195	10	162	2	33
20	청송	8	218	8	198		20
21	영양	7	166	7	166		
22	군위	11	237	8	172	3	65
23	고령	12	228	8	150	4	78
24	울릉	4	70	4	70	0	0
	계	435	10,169	347	8,217	88	1,952

| 모범운전자회 및 녹색어머니연합회 |

구분	모범운전자회 경북지부		경상북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인원(명)	학교(개)	인원(명)	
1	경주	100	20	3,401
2	포북	230	22	2,450
3	포남	185	20	1,122
4	구미	112	47	21,635
5	경산	61	20	2,013
6	안동	140	13	2,520
7	김천	42	10	1,861
8	영주	106	8	550
9	영천	41	18	573
10	상주	36	5	146
11	문경	41	2	69
12	칠곡	45	8	4,550
13	의성	35	2	114
14	청도	27	3	96
15	영덕	30	3	97
16	울진	25	5	162
17	봉화	24	3	20
18	예천	40	4	325
19	성주	24	2	149
20	청송	14	5	67
21	영양	15	5	57
22	군위	20	1	31
23	고령	7	2	153
24	울릉	22	1	7
계		1,422	229	42,168



Ⅱ 참고문헌 Ⅱ

- 김성호(2012), 국가경찰 재구조화에 관한 실증연구: 자치경찰제 도입을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14(2), 111-137.
- 신현기(2008),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10년,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서울시 연구용역보고서.
- 안영훈(2018), 제주자치경찰제도의 성과와 과제, 지방행정, 78, 36-39.
- 최종술(2017), 지방자치와 자치경찰의 의의, 시민과 함께하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방향 모색, 포럼 발표자료.
- 최천근(201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합리적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2), 275-296.
- 프레시안(2019), 경북지방경찰청, 지역공동체 치안 협의체 운영으로 범죄예방 효과 상승, 2019. 7. 17.
- 황문규(2017), 문재인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에 관한 고찰,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9(4), 23-54.
- 황문규(2018),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과 과제, 자치경찰제 도입 토론회 발표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부영 외 5인), 자치경찰 기구·인력 편성방안 연구보고서, 2005. 9.
- 경찰청(자치경찰추진단), 자치경찰 도입방안 설명자료 등 내부자료.